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진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49 발의연월일: 2025. 2. 11.

발 의 자:전진숙·남인순·김선민

이수진 • 박희승 • 허종식

이훈기 • 이정문 • 김남희

이연희 • 권칠승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전파, 진료정보 침해사고에대한 긴급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영 상정보시스템, 검사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전자적 침해 또한 환자 및 의료기관의 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범 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전자의무기록 외에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도 진료정보 침해사고로 관 리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등).

#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불법 유출·위조·변조·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3의 제목 중 "진료정보 침해사고"를 "진료정보등 침해사고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"를 "전자의무기록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 또는 의료기관의 업무에 관한 정보가"로, "진료정보 침해사고"를 "진료정보등 침해사고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진료정보 침해사고"를 각각 "진료정보등 침해사고"로 한다.

제23조의4의 제목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"진료정보 침해사고"를 각각 "진료정보등 침해사고"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"전자의무기록"을 "전자의무기록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시스템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"진료정보 침해사고"를 "진료정보등 침해사고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

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"제2항" 을 "제4항"으로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긴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인터넷주소(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말한다)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92조제1항제1호의2 중 "진료정보 침해사고"를 "진료정보등 침해사고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개 정 아 행 제23조(전자의무기록) ① (생 제23조(전자의무기록) ① (현행과 략) 같음)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 (2) -----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 전하게 관리 · 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야 한다. <후단 신설> ----. 이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불법 유출・위조・변조・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 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③ • ④ (생 략) 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 제23조의3(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제23조의3(진료정보등 침해사고 통지)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 의 통지) ① ----------전자의무기록 또 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 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자적 침 해행위로 진료정보 또는 의료 업무가 교란 · 마비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(이하 기관의 업무에 관한 정보가---"진료정보 침해사고"라 한다)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진료정보등 침해사고-----야 하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<u>진료정보 침해사고</u>의 통지를 받거나 <u>진료정보 침해사</u>고의 통기를 받거나 <u>진료정보 침해사</u>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23조의4(<u>진료정보</u>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)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<u>진료정보 침해사고</u>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<u>진료정보 침해사고</u>에 관한 정보의 수집·전파
  - 2. <u>진료정보 침해사고</u>의 예보· 경보
  - 3. <u>진료정보 침해사고</u>에 대한 긴급조치
  - 4. <u>전자의무기록</u>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·분석
  - 5. 그 밖에 <u>진료정보 침해사고</u>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<u>.</u>
②
진료정보등 침해사고
진료정보등 침해
사고
<u>.</u>
· 제23조의4( <u>진료정보등 침해사고</u>
의 예방 및 대응 등) ①
<u>진료정보등 침해사고</u>
건요성모등 심해사고
1. <u>진료정보등 침해사고</u>
2. 진료정보등 침해사고
3. 진료정보등 침해사고
4. 전자의무기록 또는 보건복지
부령으로 정하는 전산시스템-
5진료정보등 침해사
ユ
<del>_</del>

#### <신 설>

#### <신 설>

- ② (생 략)
-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,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.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3 호에 따른 긴급조치를 실시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진료정보등 침해사고와 관련이 있는 인터 넷주소(「인터넷주소자원에 관 한 법률 기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말한다) 등 필요 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.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등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행정적 •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<u>(3)</u>			 	
제4	항	 	 	

제9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제92조(과태료) ① -----

- 1. (생략)
- 1의2.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 여 <u>진료정보 침해사고</u>를 통지 하지 아니한 자
- 1의3. 1의4. (생략)
- 2. ~ 5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- 1. (현행과 같음)
- 1의2. -----
- --진료정보등 침해사고----
  - \_\_\_\_\_
- 1의3. 1의4. (현행과 같음)
- 2. ~ 5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④ (현행과 같음)